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07. 9. 12 (수) 11:00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업경제위원회**

#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7년 9월 3일

나. 회부일자 : 2007년 9월 4일

### 3. 제안 이유

- 민선4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품질차별화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및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판매를 촉진하고자
-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이를 표시하는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BIG충북마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4. 주요내용

- BIG충북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 (안 제3조)
- 사용신청 및 사용권부여 방법(안 제4조 및 5조)
  -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토록 함.

- 도지사가 종합 검토하여 품질인증 및 사용권을 부여토록 함
- 사용자의 책임(안 제6조)
  - BIG충북마크를 사용하는 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함.
- 사후관리 규정(안 제7조)
  -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사후관리공무원을 지정 운영토록 하고 부적합사항 발견 시 시정·보완·고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 사용권 정지 및 취소(안 제8조 및 9조)
  - BIG충북마크 사용권을 부여받은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로 사용권의 정지·취소 등의 처분근기를 마련함.
- 위원회설치 및 기능(안 제10조 및 11조)
  -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는 품목선정과 BIG충북마크 사용권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도지사가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토록 함
- 상표사용자 지원 및 홍보(안 제13조)
  - 인증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제고를 위하여 BIG충북마크 사용자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BIG충북마크 이미지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토록 함.

##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는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이지만 전국 9개 도단위 광역단체중 우리 도와 경상남도를 제외한 7개 도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품질차별화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및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판매를 촉진하고자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이를 표시하는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의 영속성과 효과성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 특히, 본 조례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 인증마크안의 특허등록기간이 장기 1년 6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지난 7월에 특허등록을 신청하여 상표등록이 진행중인 안으로 조례를 제정할 만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또한,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는 충북에서 농특산품이 생산되는 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볼 때, 경제특별도의 브랜드슬로건인 BIG충북마크가 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될 지와 경제특별도 이미지로 제작되어 우수농특산물의 이미지가 없는 BIG충북마크를 충청북도 우수농특산품 품질인증마크로 확정시 마크에 대한 효과성이 얼마나 있을 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됨.

- 그리고, 안 제4조 중 “공동연합마케팅 조직”에 대하여는 안 제2조의 용어정의에 추가 설명을 하거나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